



해양경찰교육원 · 군산대학교 경 · 학 업무 협약



해양경찰교육원과 군산대학교는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수한 해양경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문적, 실천적 공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신의성실의 원칙) 해양경찰교육원과 군산대학교(이하 ‘양 기관’ 이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양 기관의 제 규정을 존중하며 상호호혜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협약은 양 기관 간의 공동 협력 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협약내용) 양 기관은 이 협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협력하기로 한다.

- ① 학술, 정보, 인력 상호교류 및 장비, 시설, 공간 등의 공동이용
- ② 해양경찰학과 학생 대상 해양경찰교육원 신임과정 체험 지원
- ③ 정부지원 각종 교육, 연구사업의 공동참여 및 지원 협력
- ④ 지역사회의 발전과 관련된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공동운영
- ⑤ 해양경찰교육원 바다로함 - 군산대학교 새해림호 간 교류 실습
- ⑥ 그 밖에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실무협력부서) 해양경찰교육원 교무과와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해양경찰학과를 실무협력부서로 한다.

제5조(정기회의) 양 기관은 업무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연 1회 교차로 주관하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의 협의에 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장학혜택) 군산대학교에서는 해양경찰교육원 교직원들의 대학원 진학 시 수업 지원 및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7조(비밀유지) 상호 교류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기관의 내부 사항에 관한 정보나 문서는 상대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유효기간 및 협약의 폐지) 이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에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협약의 변경)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양 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서의 보관)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에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2월 17일

해 양 경 칠 교 육 원
원 장 김 성 종

군 산 대 학 교
총 장 김 동 익
석 부 총 장